

#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

## ■ 안전보건교육

### 1.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【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】

-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
### 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【교육시간 및 교육내용】

-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,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.

| 구분      | 교육 대상         | 교육 시간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정기교육    | 현업업무 종사자      | 분기별 6시간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관리감독자         | 연간 16시간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채용 시 교육 | 신규채용 현업업무 종사자 | 8시간 이상 (단, 일용직과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체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) |

#### 가.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#### 나.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
-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- 작업 개시 전 점검, 정리정돈 및 청소 등에 관한 사항
-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
### 3.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(안전보건교육 규정 제6조 관련)

1.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2.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(보건)관리자 등 안전(보건)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3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(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)
  - 가. 안전관리전문기관·보건관리전문기관·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·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- 나.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- 다.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(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,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)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(임상심리사,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·학위 취득자)
  - 라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·간호사
  - 마. 공인노무사, 변호사
  - 바.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 - 사.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(게이트키퍼)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

## ■ 현업업무종사자

### \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별표 1)

### \*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

(제정 2020.1.15.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62호) [별표 2]

초등·중등·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 
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

1. 학교 시설물 및 설비·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
2.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
3.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

## ■ 관리감독자

### \*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

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\*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5조

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가 지휘·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작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·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·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3.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.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·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·감독
5.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·조언에 대한 협조  
가. 안전관리자  
나. 보건관리자  
다. 산업보건의
6.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
가.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
나.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7.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